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4.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 평가결과 보고서

5. 영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2항 중 “영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의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조제5항”을 “영 제7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신청 유형 및 기업 규모별 평가절차(제4조 관련)

- 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재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나.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연장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 일수의 3/4 수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인증평가 및 재인증 평가 시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총 평가일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
다만, 인증 연장 평가 시에는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를 합친 총 평가일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평가를 실시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1. 항목별 금액

구분	금액										
가.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수(N)</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정계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 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 15</td> <td style="text-align: center;">$0.8 - [(N - 3) \times 0.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0.44</td> </tr> </tbody> </table>	사업장수(N)	보정계수	1 ~ 2	1	3	0.8	4 ~ 15	$0.8 - [(N - 3) \times 0.03]$	16 이상	0.44
	사업장수(N)	보정계수									
	1 ~ 2	1									
	3	0.8									
	4 ~ 15	$0.8 - [(N - 3) \times 0.03]$									
16 이상	0.44										
나. 경비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출장비	인증평가원 1인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										

<인증평가 소요 기간>

인증평가 대상 업체 종업원 수(인)	소요 기간(일)			
	최초 인증평가 / 재인증평가			인증연장
	문서 평가	현장 평가	총 평가 일수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
1 ~ 99	1	3	4	3
100 ~ 199	1	4	5	4
200 ~ 625	1	5	6	5
626 ~ 875	1	6	7	5
876 ~ 1175	2	6	8	6
1176 ~ 2000	2	7	9	7
2001 ~ 4000	3	8	11	8
4001 이상	3	10	13	10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최초 인증 [] 인증 연장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실무 담당자	성명	소속	
	직책	재난관련 자격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인증평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처음으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인증 평가) <input type="checkbox"/>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연장 평가) <input type="checkbox"/>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재인증 평가)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대행한 경우 만 작성함)	수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행기관(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대행등록번호
	전화번호	계획수립책임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1부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인증평가 결과서 1부 5.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1부 (인증 연장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단서 신설></u></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u>사업자등록증을 확인</u>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p>	<p>제4조(인증신청) ① -----</p> <p>-----</p> <p>-----</p> <p>-----</p> <p>-----</p> <p>-----</p> <p><u>다만,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평가결과 보고서</u></p> <p>5. <u>영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p> <p>② -----</p> <p>-----</p> <p>-----</p> <p>-----</p> <p>-----</p> <p>----- <u>사업자등록증을 확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u></p>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용으로 한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3항의 단서-----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조제9항-----